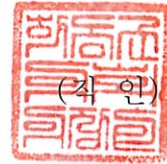


제32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4. 2. 2.)에서  
제의를결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19일

하동군 의회 의장

이 관우



하동군 조례 제2630 호

###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을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지이용시설(버섯재배사, 곤충사육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산림훼손·산사태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p> <p>① (생략)</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1. <u>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u></p> <p>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p> <p>2. ~ 6. (생략)</p> <p>③ (생략)</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u>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지이용시설(버섯재배사, 곤충사육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u></p> <p>-----</p> <p>-----</p> <p>----- .</p> <p>2. ~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군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부</u></p>

현행	개정안
	<p><u>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산림훼손·산사태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u></p> <p>가. <u>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p> <p>나. <u>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p>